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10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김승원 · 강준현 · 민병덕
김종민 · 김용만 · 이주희
서미화 · 이강일 · 이성운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투자판단 등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행위에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수령 여부와 이해상충의 발생여부 등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없어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유사투자자문을 하는 자의 보유자산 공개의무)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자로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수량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가상자산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2.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

제1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투자자문을 하는 자의 보유자산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조언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유사투자자문을 하는</u> <u>자의 보유자산 공개의무) 가상</u> <u>자산사업자 외의 자로서 간행</u> <u>물 · 출판물 · 통신물 또는 방송</u> <u>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u> <u>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u> <u>바에 따라 수령한 대가 또는</u> <u>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u> <u>류 · 수량을 공개하여야 한다.</u> <u>1.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u> <u>목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u> <u>자판단 또는 가상자산의 가치</u> <u>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u> <u>라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u> <u>2.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u> <u>의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u>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제19조(벌칙) ① ----- ----- ----- ----- -----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 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 다. 1. ~ 4. (생 략) <u><신 설></u> ② ~ ⑥ (생 략)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수령 <u>한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 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 지 아니한 자</u> ② ~ ⑥ (현행과 같음)
--	--